

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의안번호 : 제1689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7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0. 7. 14.

2. 제안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7. 17. ~ 2020. 7. 24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) : 원안가결

○ 본 조례개정안은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만을 「질서
행위위반규제법」에 따른다고 규정하던 기존 조항에 과태료 이
의신청 절차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
이후,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기
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안
에 동의함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¹⁾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의 구제권 등과 관련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조례 개정 배경 등

-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(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)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음
- 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점검표는 ‘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’, ‘기본권보장 및 권리의 구제’, ‘시민참여 보장’ 등 3개 분야에 대해 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하였고, 동 점검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

1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(인권영향평가)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※ 참고 : 자치법규 전수조사 점검 기준

평가분야	평가항목
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	1)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
	2)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
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	3)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
	4)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
	5) 반환권 제약(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)
	6) 구제권 제약(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, 구제절차)
시민참여 보장	7) 개인정보보호권 보장
	8)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
	9)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

- 그 결과 869개 자치법규 중 62개 자치법규,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²⁾는 지난 4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³⁾ 하였음

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강화(안 제11조)

- 현행 조례 제11조⁴⁾에서는 혼잡통행료 미지불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

2)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14조(설치)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(이하 "인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3.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
3) '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요청'_ 인권담당관(2020. 4. 6.)

4) 「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」 제11조(위반차량 과태료) ①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⁵⁾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
- 하지만, 현행 조례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”으로 개정하여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시민들의 구제권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는 ‘이의신청’은 근거 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는 ‘이의제기’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용어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후 수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임

5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(이의제기)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